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2024. 4. 29.

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

□ 점용·사용 허가 내역

허가 번호	허가 연월일	점용지역			점용 목적	점용기간	점용자	
		위치	지목	면적 (㎡)			성명	주소
2024-1	2024. 4. 29.	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72-1	구거	0.32	인공구조물 설치 (전주 2본)	허가일로부터 ~ 2034. 4. 14.	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202

※ 관계 도면, 조서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열람. 끝.

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4-29호

고 시 문

1. 하천법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,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24년 4월 29일

성남시 분당구청장

하천의 명칭	탄 천		
점용자의 성명	성남시 도로과	점용자의 주소	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
점 용 위 치	정자동 100-3번지	점 용 면 적	12,792㎡
점 용 목 적	신기보도교 및 백궁보도교 절단 및 보수보강 공사	점 용 개 요	-
점 용 기 간	2024.04.25. ~ 2024.09.29.	기 타 사 항	-